ISSUE PAPER CHECK

PARCEL SERVICE

산업안전보건법상 택배 노동자 보호 규정 검토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는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다. 이에 따라 노동법상 최저 노동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가 많다. 단적인 예로,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이 같은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산재가 잦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년 전부 개정을 통해 부족하나마 택배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물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법 개정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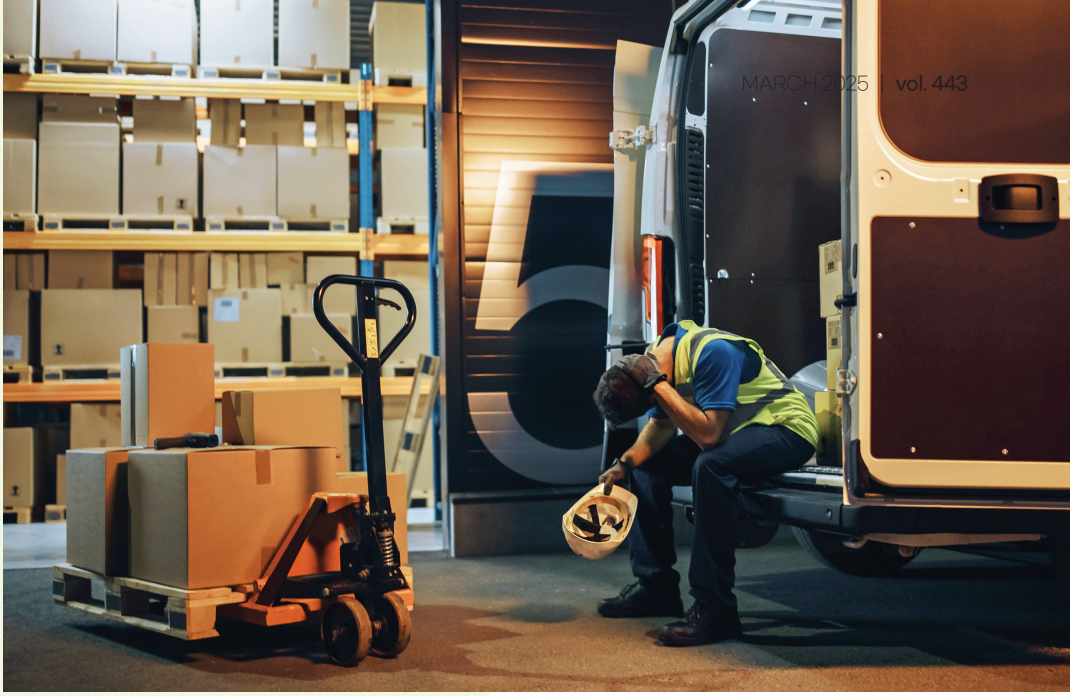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족하지만 현재 마련된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택배 노동자 보호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택배 노동자 보호 규정의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택배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보호 대상이 되는 택배 노동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우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산재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법 규정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 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제98조, 제99조, 제171조부터 제178조까지,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제385조, 제387조부터 제393조까지 및 제657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3.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또한 택배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택배업체'라 한다)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된 고용구조 및 형태를 반영해 택배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택배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택배 노동자 보호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고에서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유해요인조사

택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택배업체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지 및 사후조치

택배 노동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택배업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택배업체는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성 등의 주지

택배업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택배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그밖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택배업체는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해당 택배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체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해당 택배 노동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택배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택배업체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택배 노동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택배 노동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중량물의 제한

택배업체는 택배 노동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택배 노동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택배업체는 택배 노동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택배 노동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중량의 표시 등

택배업체는 택배 노동자가 5㎏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택배 노동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작업자세 등

택배업체는 택배 노동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택배 노동자에게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결론을 대신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된 고용구조 및 형태를 반영해 택배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아직 전체 택배 노동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 보호 내용이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택배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차별 없이 보호하는 법률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